**UNIST 대학원 도시환경공학과 박사학위심사 규정**

통합규정 제정 2015. 5.

개정 2017. 1.

개정 2017. 6.

**【도시환경공학부 박사학위심사 기준은 학교의 심사기준 보다 우선한다.】**

**【본 규정은 UNIST 대학원 도시환경공학과 소속의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된다.】**

**【2015. 10. 1 이후 실시되는 박사학위 자격시험 및 논문심사는 모두 본 규정을 따른다.】**

**[개정 내용은 개정 시점 이후 실시되는 모든 박사학위 자격시험 및 논문심사에 적용된다]**

**【박사학위 자격시험 및 논문심사는 기본적으로 모든 세부전공이 동일하게 진행하되, 박사학위논문 최종심사 자격은 세부전공 별 특성에 따라 세칙을 정하여 준용할 수 있다.】**

**박사학위 자격시험**

○ 응시자는 수강한 대학원 전공과목\* 가운데 박사학위 자격시험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3개 과목을 시험과목으로 선택하며, 동일 교수의 담당과목은 2개를 초과하여 선택할 수 없다.

\*대학원 과정에서 이수한 전공학점으로 인정되는 대학원 및 학부 개설 과목 (2017.01.)

○ 자격시험위원회는 지도교수와 시험과목 담당 교수를 포함하여 3인으로 구성한다.

동일 교수의 담당 과목 2개 지정으로 자격시험위원이 1인 더 필요 시, 외부 위원 구성을 할 수 있다.

○ 자격시험 유형은 지필고사와 구술고사 가운데 자격시험위원회가 결정한다.

○ 지필고사의 경우 시험과목의 담당교수가 출제한 문제에 대하여 정하는 시간 내에 필답하여 제출하며, 구술고사의 경우 시험과목의 담당교수와 대면하여 해당 과목의 기초지식과 응용능력에 대한 문답평가를 진행한다.

○ 각 개별과목에서 70점(100점 만점) 이상을 획득하여야 합격으로 인정한다.

○ 기준 점수 미달 과목에 대하여 직후 학기에 1회에 한하여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, 재시험 후 최종 불합격 처리되는 경우 제적 조치한다.

**○ 박사학위 자격시험은 박사과정, 석박사통합과정 모두 입학 후 6학기 이내에 통과해야 한다. (2017.06.)**

○ 매 정규학기 마지막 2주를 박사학위 자격시험 주간으로 정하여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**박사학위논문 심사**

**박사학위논문 예비심사**

○ 입학 후 4학기 이상 경과한 자 가운데 박사학위 자격시험을 통과한 경우에 한하여 박사학위논문 예비심사에 응시할 수 있다.

○ 논문심사위원 5인을 선정하되, 학과 내부 3인과 학과 외부 2인(최소 1인은 타 대학/기관)으로 구성한다. 논문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5인의 협의를 통하여 선출한다.

○ 심사 2주 전까지 영문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들에게 제출한다.

- 연구계획서는 최종심사 1년 전까지 제출한다(UNIST 대학원 규정).

○ 연구계획서 우수성 평가 50점과 구두발표 평가 50점을 합산하여 7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합격으로 인정한다.

○ 불합격 시에는 직후 학기에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실시하며, 재심 후 최종 불합격 처리되는 경우 제적 조치한다.

**박사학위논문 중간심사(선택사항)**

○ 지도교수와 논문심사위원회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, 예비심사와 최종심사 사이에 중간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○ 중간심사에서는 구두발표를 통하여 예비심사 이후 연구 진도와 박사학위논문 준비상황을 점검한다.

**박사학위논문 최종심사**

○ 최종심사일 이전에 전공분야에 따라 아래와 같은 SCI(E)/SSCI(E) 주저자 논문\* 게재(게재승인 인정)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.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 | 박사과정 | 석박사통합과정 |
| 환경과학 | 2 | 3 |
| 환경공학 | 3 | 3 |
| 도시건설 | 1 | 1 |
| 재난관리 | 논문심사위원회가 지원자의 연구주제를 감안하여 환경과학, 환경공학, 도시건설 가운데 선정하는 관련 전공분야의 논문 게재 요건을 준용함. |
| 과학예술융합전공 | 논문심사위원회가 지원자의 융합전공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함 (논문심사위원회 판단에 따라 예술작품 및 저서 발표 등 인정 가능).(2017.01.) |

\*피심사자가 공식적인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재학기간 중에 UNIST 소속의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참여하여 게재한 논문으로, 박사학위 지도교수가 교신저자로 명시된 논문만 인정함. 단, 지도교수 변경 및 이직 등으로 중도 편입한 학생이 UNIST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논문심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기존 논문 실적을 인정할 수 있음.

○ 최종심사 2주 전까지 영문 최종심사용 논문을 심사위원들에게 제출한다.

○ 최종심사용 논문, 연구실적, 연구성과의 우수성, 구두발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한다.

○ 불합격 시에는 논문심사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실시하며, 재심 후 최종 불합격 처리되는 경우 제적 조치한다.

○ 최종심사는 예비심사 또는 중간심사와 동일 학기에 진행할 수 없다.